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2893 |
|----------|------|

제출년월일 : 2021년 10월 15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사업 추진과 사업 참여자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서울시민의 건강관리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 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28조의2 제1항제5호).
- 나. 건강관리 사업 참여자 지원에 대한 근거,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및 방법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의3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국민건강증진법」
-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참조
-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 2) 입법예고('21. 8. 5.~8. 25.)결과: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사업

제2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3(참여자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28조의2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
2. 제28조의2제1항의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자가 건강정보 제공에 동의할 경우 사업진행에 필요한 장비·도구 및 건강관리 용품,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 장비·도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사업 참여 실적, 횟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 참여 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품권 또는 물품 등의 형태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른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8조의2(지역중심 주민참여 활성화) ① 시장은 주민의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건강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u><신설></u></p> <p>5. (생략)</p> <p>②·③ (생략)</p> <p><u><신설></u></p> | <p>제28조의2(지역중심 주민참여 활성화) ①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사업</u></p> <p>6. (현행 제5호와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28조의3(참여자 지원) ① <u>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p> <p>1. <u>제28조의2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u></p> <p>2. <u>제28조의2제1항의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u></p> <p>② <u>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자가 건강정보 제공에 동의할 경우 사업진행에 필요한 장비·도구 및 건강관리 용품,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 장비·도</u></p> |

| 현 행 | 개 정 안 |
|--------|---|
| | <p><u>구 등을 지원할 수 있다.</u></p> <p><u>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사업 참여 실적, 횡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 참여 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품권 또는 물품 등의 형태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u></p> <p><u>④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른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u></p>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제28조의2(지역중심 주민참여 활성화),
제28조의3(참여자치지원) 개정으로 사업 추진에 따라 예산소요
2. 비용추계의 전제 : 매년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여 매년 시민 5만명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 구분 | | 연도 | | | | | 합계 |
|----|------|-------|-------|-------|-------|-------|--------|
| |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
| 세출 | 일반회계 | 8,381 | 5,081 | 5,081 | 5,081 | 5,081 | 28,705 |
| | 합계 | 8,381 | 5,081 | 5,081 | 5,081 | 5,081 | 28,705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 구분 | | 연도 | | | | | 합계 |
|----|-------|-------|-------|-------|-------|-------|--------|
| |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
| 국비 | | | | | | | |
| 시비 | 지방세수입 | 8,381 | 5,081 | 5,081 | 5,081 | 5,081 | 28,705 |
| | 세외수입 | | | | | | |
| | 지방채 등 | | | | | | |
| 민간 | | | | | | | |
| 기타 | | | | | | | |
| 합계 | | 8,381 | 5,081 | 5,081 | 5,081 | 5,081 | 28,705 |

5. 덧붙이는 의견 : 재원 조달 관련 시 예산편성액으로 조달

6. 작성자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이은결(02-2133-7599)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붙임 자료 참조

□ 소요예산 : 총 28,705백만원

(단위 : 백만원)

◆ 예산 세부내역

|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
| 합계 | 8,381 | 5,081 | 5,081 | 5,081 | 5,081 |
| 기타보상금 | 3,750 | 3,750 | 3,750 | 3,750 | 3,750 |
| 정보통신기기 | 2,500 | 2,500 | 2,500 | 2,500 | 2,500 |
| 보상제도 | 1,250 | 1,250 | 1,250 | 1,250 | 1,250 |
| 전산개발비 | 3,300 | - | - | - | - |
| 시스템구축 | 3,300 | - | - | - | - |
| 인건비 | 1,331 | 1,331 | 1,331 | 1,331 | 1,331 |

- (기타보상금) 정보통신기기 : 매년 5만명×50천원×5년 = 12,500백만원
 보상제도 운영 : 매년 5만명×50천원×50%×5년 = 6,250백만원
- (전산개발비) 시스템구축 : 3,300백만원
- (인건비) 매년 30명×3,697천원×12개월×5년 = 6,655백만원